

해비치컨트리클럽서울

이용 약관

해비치컨트리클럽서울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해비치컨트리클럽(주)(이하"사업자"라 한다) 와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비치컨트리클럽서울 (이하"사업장")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비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자가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1. 사업자는 본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 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이를 원치 아니할때에는 전항의 규정으로 사용자가 이용자에게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예약)

1.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시간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는 회원 여부 및 회원의 종류에 따라서 예약 등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예약금 및 해약금)

1. 위의 예약을 받음에 있어 사업자는 입장료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예약 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예약 당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
3. 이용자가 예약 당일로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 없이 당일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환불되지 않는다.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한 이용자가 예약 당일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가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며, 예약금이 없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10% 배상한다. 단,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1.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 ①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 요금을 포함한다)
 - ②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③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와 회원제코스 이용시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포함한다)
 - ④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18홀 기준 9홀 이용요금)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이용요금을 100%(18홀 기준 18홀 이용요금)를 징수한다.
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18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장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정산한다.
기 이용한 홀수에 대한 요금 부과 판단은 티오프(티샷)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홀별 정산 : 이용요금 x (기 이용한 홀 수 / 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1. 골프장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출 및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2. 골프장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약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사업자가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 종료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시간 내에 경기진행이 될 수 없을 때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3. 도박을 하거나, 진행을 지연시켜 타인의 골프장 이용에 큰 방해가 될 때
4.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5. 사업자의 임직원, 경기보조원, 다른 이용자 등에게 비신사적인 행위(성희롱, 성추행, 폭력, 모욕 등)를 하였을 때
6. 골프장의 시설, 수목, 그늘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7. 골프장 이용요금 미납한 적이 있는 때
8.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등록하거나, 사업자의 신분확인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9.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음주)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10.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경기보조원이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18홀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사의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위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본 골프장의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지켜야 한다.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또한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신사적인 에티켓 및 매너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이용자는 경기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일 인접 홀에 타구한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5.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6.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 발생 시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경기진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 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보조자 및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8조(귀중품의 보관 등)

1. 현금 및 귀중품은 이용자가 그 품명과 금액을 기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시켜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는 그 분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기타의 휴대품도 이용자가 별도로 보관시킨 것이 아니면 사업자는 그 분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 해서는 아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담배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락커의 열쇠)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분실 및 파손시에는 제작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 21 조(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후에는 이에 대한 분실·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2조(물품의 대여)

골프클럽, 골프화, 골프카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수량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이의 인수 이후 분실 및 훼손 시 이용자가 실비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3조(차량의 주차와 보관)

1. 이용자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시정한 후 차량의 열쇠를 본인의 책임 아래 보관한다.
2. 전항에 의한 주차도중 도난 등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제24조(안전관리와 편의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25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